

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2. 6. 17

제안자 : 최종복의원

1. 수정이유

- 제1조에 목적 명시, 제2조의 심의회의 구성인원 및 임기의 변경, 심의회 회의의 소집사유 및 시기 명시, 간사 임명권자의 변경, 일부 조문상 명확히 하지 않은 용어 수정,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단서규정 명시 등 동 조례안의 목적과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1조 목적 중 “이 조례는 과학교육진흥법”을 “이 조례는 충청북도과학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진흥법”으로 한다.
- 안 제2조 제1항 중 “15인”을 “9인 이상 15인”으로, 안 제2조 제3항 제2호 “인사”를 “자”로, 안 제2조 제4항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, “직”을 “직위”로 한다.
- 안 제5조 제1항 중 “그 의장이 된다”를 “그 회의를 주재한다”로 하며, 제2항에는 “위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”를 신설하며,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한다.
- 안 제6조 제2항 중 “충청북도교육청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”를 “충청북도교육청 과학교육담당장학관이 되며”로 한다.
- 안 제7조는 “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수당지급은 충청북도교육·학예에관한제수당지급규칙에 의한다”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한다.